

# 소화기인터벤션의학회 정관

제정: 2007년 11월 7일

개정: 2023년 6월 30일

개정: 2024년 6월 5일

개정: 2025년 5월 19일

## 제 1 장 총칙

### 제 1 조 (명칭)

이회는 '소화기인터벤션의학회'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"Society of Gastrointestinal Intervention"으로 하며 약어는 "SGI"로 한다

### 제 2 조 (사무국)

SGI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두며,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지회 또는 지회 사무소를 허용할 수 있다.

### 제 3 조 (지회의 설치와 협력에 대한 규정)

지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칙은 이회의 회칙과 부합하도록 하며, 운영은 독립적으로 한다.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규정으로 정한다

## 제 2 장 목적 및 활동

### 제 4 조 (목적)

SGI는 소화기 중재술의 연구 및 각 회원 간의 정보교류를 도모하며 의학발전과 국민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5 조 (활동)

SGI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.

- 국내외 학술대회 및 집담회 개최
- 학회지 정기 발간
- 소화기중재술에 관한 연구 및 지침 제공
- 국제학회와의 교류
- SGI 누리집 관리
- 기타 SGI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## 제 3 장 회원

### 제 6 조 (회원의 종류 및 자격)

SGI 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은 자격을 부여한다.

1. 정회원: 소화기 관련 의료 전문가(의사 또는 과학자)로 SGI 학회 목적에 동의하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
2. 준회원: 소화기 관련 의료 분야에 기여하고자 하는 인턴, 학생, 간호사, 연구원 또는 방사선사 등으로 회를 납부한 회원
3. 특별회원(국제회원): SGI 의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소화기 관련 의료 전문가 또는 법인, 회사, 학회 단체로 SGI 의 목적에 동의하고 충분한 기여를 한 회원.
4. 명예 회원: 만 65세 이상으로 본 학회에서 10년 이상 학회 활동을 한 정회원으로, 명예 회원은 학술대회 참가비 등 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받음.
5. 회비는 본회가 개최 또는 참여하는 국제 학술대회의 등록비로 같음함.

### 제 7 조 (회원가입)

회원가입 신청자는 제6조의 자격을 갖추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가입이 결정되면 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의 자격이 발생한다.

### 제 8 조 (회원의 의무)

SGI 회원은 SGI 회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학술대회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. 또한 학회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및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.

### 제 9 조 (권리)

1. 정회원은 의결권을 갖는다. 또한 본 학회가 발생하는 각종 간행물, 서류 및 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고, 본 학회가 주최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 정회원은 이사가 또는 감사가 될 자격을 가지며 이에 대한 선거권을 갖는다.
2. 그 외의 회원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 학회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을 받을 수 있다.

### 제 10 조 (포상 및 징계)

회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이사회 의결로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다.

#### 제 1 항(포상)

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학술활동 및 SGI 학회에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회원 및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술상, 봉사상 등 포상을 한다.

## 제 2 항(징계)

### 1) 징계사유

가.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2년간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(학술대회 참가비 미납 포함)

나. 본 학회에 대하여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재산상 혹은 명예 훼손을 초래한 경우  
다. 의료 윤리를 위배하거나 품위를 훼손한 경우

라. 이사회에서 해임 결정이 난 회원

### 2) 징계종류

가. 경고 및 시정 지시

나. 2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

다. 제명

## 제 11 조 (탈퇴)

회원이 중요한 사유로 SGI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 통지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.

## 제 4 장 임원

### 제 12 조 (임원)

제1항. SGI는 다음의 임원을 선임한다.

1. 회장: 1명

2. 사무총장 : 1명

3. 부사무총장 : 1명

4. 차기회장: 1명

5. 재무이사: 1명

6. 감사: 2명

7. 각 위원회 이사: 10명 내외

8. 자문위원회: 약간명

제2항. SGI는 학술 활동 및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내 위원 1~2인, 국외 위원 1~2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.

1. 학술위원회 (Scientific Program Committee)

2. 편집위원회 (Editorial Committee)

3. 홍보위원회 (Publicity Committee)

4. 섭외위원회 (Liaison Committee)

5. 연구윤리위원회 (Research Ethics Committee)

## 6. 조직위원회 (Organizing Committee) (이사회가 겸임)

## 7. 자문위원회 (Steering Committee)

### 제 13 조 (임원의 선출)

#### 제 1 항 (회장 및 차기회장)

이사회 및 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차기 회장은 회장으로, 전 회기의 사무총장은 차기 회장으로 이임한다.

#### 제 2 항 (사무총장)

부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되며, 부사무총장 2년 후 사무총장이 된다. 사무총장 2년 임기 후 차기 회장으로 2년동안 이사회에 참여한다.

#### 제 3 항 (재무, 감사인준)

이사회 과반수이상의 추천으로 회장이 재무이사와 감사를 임명한다.

#### 제 4항 (이사 및 재무이사)

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재무이사와 이사를 임명한다.

### 제 14 조 (임원의 임무 및 임기)

#### 제 1 항 (임원의 임기)

- 1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.
- 2) 결원을 대신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#### 제 2 항 (임원의 임무)

본 학회의 임원의 역할은 다음으로 정한다.

- 1)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, 총회 및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본회의 회무를 관장한다.
- 2) 사무총장은 SGI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, 각 위원회 간의 의견 조정과 각종 사업의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. 또한 회장 부재 시 이사회를 대행한다.
- 3) 차기회장은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이사회에 참석하며,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회장의 임무를 자동 승계한다. 회장 유고 시 차기 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- 4) 부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사무총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.
- 5)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정의 관리, 운영 및 회계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6) 감사는 SGI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를 하며 총회에 보고한다.
- 7) 자문위원회는 SGI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.

## 제 5 장 회의

### 제 15 조 (총회)

제 1 항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의장이 된다.

제 2 항.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제 3 항. 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성립되며,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 동수 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 4 항. 총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다음 사항을 보고한다.

- 1) 정관 개정
- 2) 연간 예산 및 재무제표 보고 및 연간 활동 승인
- 3) 임원 선임 및 해임
- 4)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
- 5) 이사회에서 제기하는 안건
- 6) 기타 중요사항

### 제 16 조 (이사회)

제 1 항. 이사회는 제12조에 명시된 SGI의 이사들로 구성되며,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.

제 2 항. 정기 이사회는 연 6회 이상 개최하며, 임시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,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
제 3 항.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사장은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 단, 회칙의 변경, 회원의 징계 등 중요 사항은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항.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- 1) 이사의 선출 및 보선에 관한 사항
- 2)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
- 3) 예산, 결산 및 제 회비의 심사에 관한 사항
- 4)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5) 이 학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
- 6)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
- 7) 특별회원(국제회원)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

## 8)기타 학회의 주요 사항

### 제 17 조 (위원회)

SGI는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이사회의 결정을 수행한다. 각 위원회의 이사는 해당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록을 임원단에게 제출하고, 필요한 경우 회의결과를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.

1. 학술위원회: 학술 행사 진행 및 운영 계획 등, 집담회 및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2. 편집위원회: 학회지 및 학회 관련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3. 홍보위원회: 의료 정보의 수집, 보급 및 SGI 학술대회와 관련된 대외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4. 섭외위원회: SGI 학회 외국인 참석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, 외국회원 지속 유지 및 확장을 관장한다.
5. 연구윤리위원회: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에 대한 부정행위 심의 및 예방과 연구 출판 윤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.
6. 조직위원회: 이사회 구성원이 겸임하고 SGI 국제학술대회의 개최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
7. 자문위원회: 전임 회장단 및 국제대표들로 구성되며 SGI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전략 방향을 제시한다.

### 제 18 조 (결의 및 실효성)

위원회의 안건은 전체 이사 수의 절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 제 13조와 관련된 안건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최종 의결하지 아니하면 부결된다.

## 제 6 장 재무 및 회계

### 제 19조 (재정)

제 1 항.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. 제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- 1) 회비 (학술대회 등록비)
- 2) 기부금 및 찬조금
- 3)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

제 2 항. 본 회의 세입, 세출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받은 다음,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보고하고 회계 연도는 관례대로 한다.

제 3 항. 본 회의 재정은 독립적 재산 관리를 하며 구성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다.

## 제 20 조 (회계년도)

1. SGI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2. SGI의 세입, 세출결산은 조직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재무이사가 총회에 보고한다.

## 제 7 장 부칙

### 제 21 조 (회칙개정)

본회의 회칙 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후 효력을 갖는다.

### 제 22 조 (기타)

1. SGI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결정된다.
2.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즉시 발효 시행한다.